

8장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 지식재산권 제도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법적 권리를 뜻합니다. 한국 정부의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되며, 최근에는 첨단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지식재산권도 점차 다양해져서 영업비밀보호권이나 반도체집배치설계보호권과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의 종류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절차
- 저작권
- 신지식재산권

1-1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의 정의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물과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나, 기계와 같은 동산의 소유권이 있으면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듯이 지식재산권도 자신이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계끔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원천/핵심기술(대발명)
		실용신안권	주변/개량기술(소발명)
		디자인권	물건의 디자인
		상표권	식별력 있는 기호/문자, 도형
	저작권	저작권	문학, 예술분야 창작물
		저작인접권	실연가, 음반제작가, 방송사업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등

1-2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절차

(1) 특허

보호대상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특허 요건

-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진보성).

주요 절차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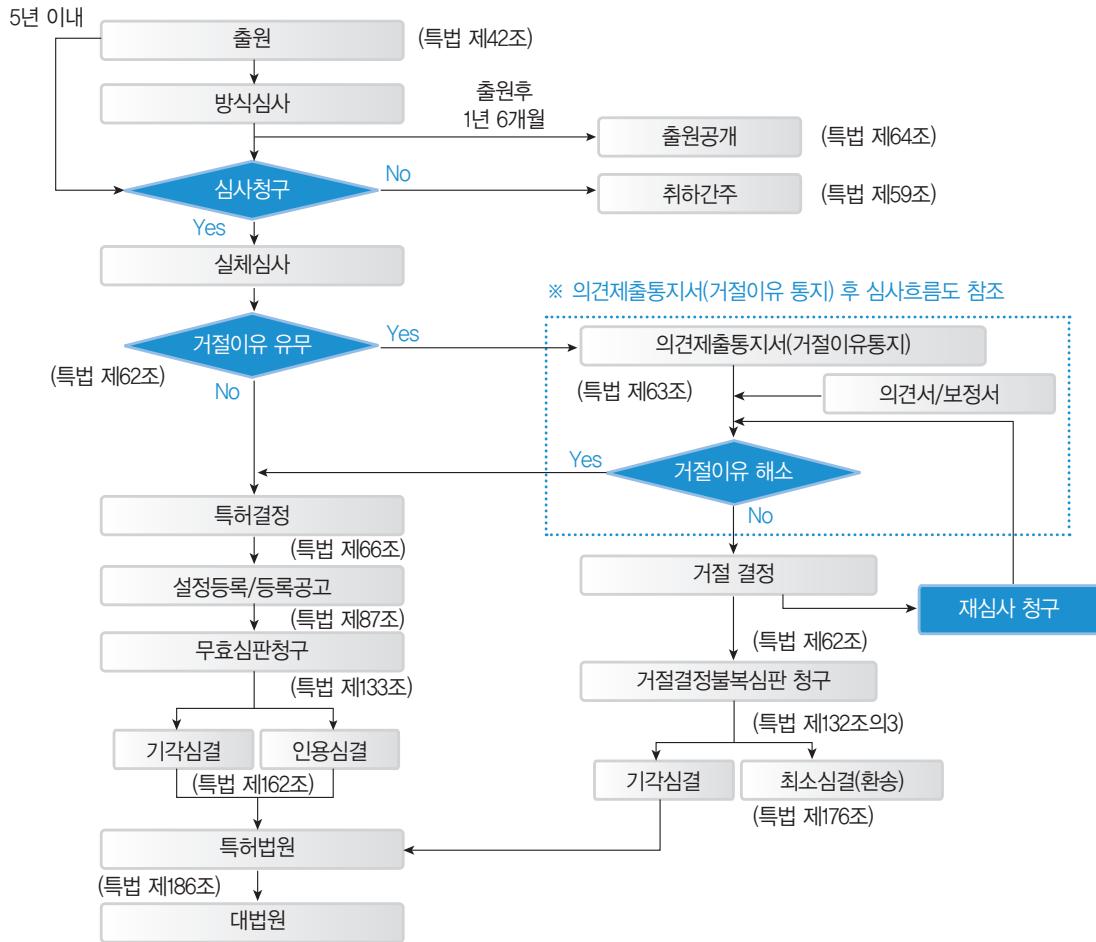
- 방식심사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 심사청구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
※ 방어출원: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 출원공개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실체심사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 특허결정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
-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하며,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
- 거절결정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판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도〉



(2) 실용신안권

보호대상

-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구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출원일이 1999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인 경우 적용)

-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모방이 용이한 실용신안기술을 조기에 보호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개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
- 실제적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권리가 부여됨에 따라 부실 권리의 행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기술평가제도 도입

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 후 등록제도, 출원일이 2006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 전망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설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심사 전 등록제도인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장점이 감소되고, 심사 없이 등록된 권리의 오·남용, 복잡한 심사절차로 인한 출원인의 부담 증가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심사 전 등록제도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용신안제도를 심사 후 등록제도로 전환
- 실용신안제도가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 후 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특허제도와와의 통일된 절차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함

(3) 상표권

상표의 개념

• 상표법상 상표

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을 의미. 종전에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만으로 상표의 구성요소를 한정하였으나, 2007년 7월 1일부터는 상표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상표를 상표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음.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

• 서비스표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단체표장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 업무표장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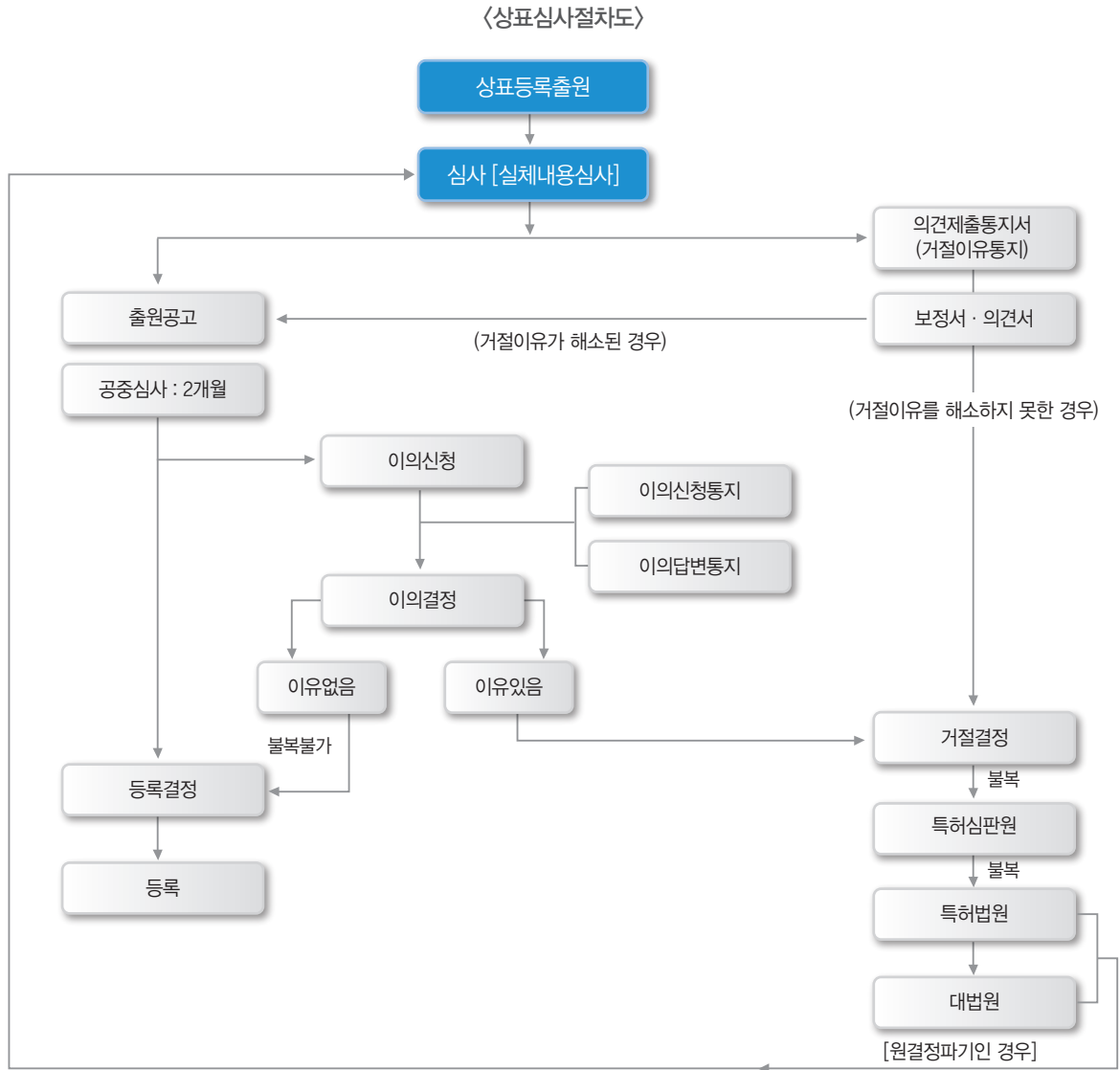
심사절차

• 상표의 출원공고제도

상표로의 권리를 설정등록 하기 전에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공중심사에 회부함으로써 각계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출원인은 타인이 무단으로 출원된 상표를 사용하여 업무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상표의 이의신청제도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연장 불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반드시 이의신청의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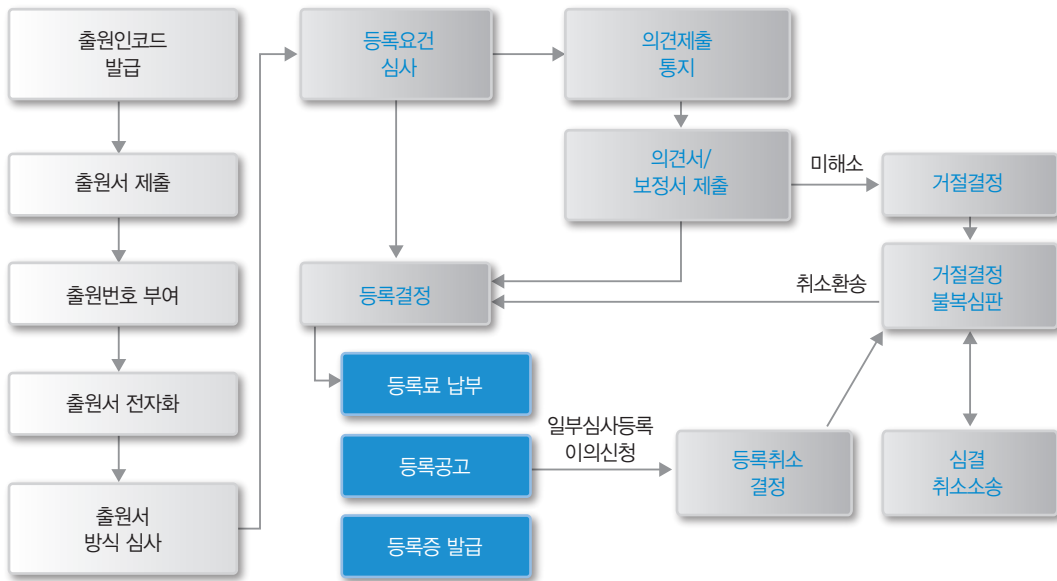


(4) 디자인권

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처리 절차

-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식품류(A1), 의복류(B1), 침구류(C1), 용지·인쇄물류(F3), 포장용기류(F4), 직물지류(M1), 잡화류(B2), 신발류(B5), 교재류(F1), 사무용품류(F2)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하여야 되며,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 및 처리절차도〉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의 제도

- 유사디자인제도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 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을 변경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상관습상 한 벌로 판매되고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한 벌의 차 세트, 한 벌의 꺾연 용구세트 등)
- 비밀디자인제도
출원 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광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둘 수 있도록 한 제도

1-3 저작권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권과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로 구성됩니다.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법 제2조 1호)을 말하며, 반드시 문학·예술 분야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 구성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한편 2003년 법 개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창설되면서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1) 저작권법

개념

-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입니다.

종류

- 저작권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권의 발생 및 법적 성질

-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함. 이런 점에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차이가 있음
- 저작권의 법적 성질: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이며, 준물권성이 있음.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권리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양도나 이전이 가능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음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직·간접적인 사회의 도움을 받아 저작물이 창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자의 독점을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으며, 문화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 지식재산권이 제한됩니다(출처 표시가 의무화 된 경우가 있음).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원칙: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70년
-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 프로그램저작물: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 공동저작물: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
- 보호기간의 기산: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해의 다음 해 1월1일로부터 계산
-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의 사망 또는 공표일로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50년 기간이 만료한 것입니다.

저작권의 등록

-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법률적 이익이 발생합니다.
- 추정력: 등록된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로 추정.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음.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를 당했을 때 과실에 의하여 침해받은 것으로 추정함
- 대항력: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출판권을 설정받은 후 양도 혹은 설정등록을 해놓은 경우 나중에 이중 양도 혹은 출판권 설정이 발생하더라도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됨

(2) 저작권접권

개념

- 저작권접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있어서 자본 투자와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저작권접권자

- 실연자: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감독하는 자를 포함(배우, 가수, 연주자, 지휘자 등)
- 음반제작자: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획·책임을 지는 자를 말함
- 방송사업자: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함

저작권접권자의 권리

- 저작권접권자의 권리도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그 권리가 제한됩니다. 또한 저작권접권의 보호는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물을 공연하거나 방송할 때에는 저작권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이용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접권의 보호기간

- 실연: 실연을 한 때로부터 70년
- 음반: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
- 방송: 방송을 한 때로부터 70년

(3)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일종의 독자적인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구성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Database)의 개념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함(법 제2조 19호)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짐(법 제93조 제1항)
- 보호기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함(법 제95조 제1항)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 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함(법 제95조 제2항)

(4) 침해 구제

원칙

-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 구제

- 피해자는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예방, 침해정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형사 구제

- 저작권자가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수사당국에 소추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야 성립하는 친고죄로서, 그 침해를 안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는 저작권자에게 침해가 있음을 제보할 수는 있지만 직접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아울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아울러 처벌할 수 있습니다(법 제136조 제2항).

1-4 신지식재산권

과학기술 발전 등에 따라 특허·저작권 등 전통적 지식재산권 외에 새로운 영역의 지식재산(新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도로는 보호되기 어려운 전통지식, 식물신품종, 지리적표시 등의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신지식재산권은 첨단저작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그 밖에 지리적 표시, 인터넷도메인네임, 맛/소리/냄새 상표 등에 따라 관장하는 정부 부처가 각각 담당하여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11.5월)시켜 국가지식재산의 통합운영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지식재산권 보호노력

한국은 지식재산권 강국의 실현을 모토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방면의 행정적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따른 세계의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특허청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시스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FTA 확산 추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국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
- 국제협력강화

2-1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

지식재산권의 창작, 보호 및 실용화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권 강국의 실현’이라는 장기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는 관련 IP 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의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은 전세계 경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으로서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G5수준의 지식재산 서비스체계 구축

특허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심사·심판의 처리기간과 품질에서 경쟁력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주요 선진국과 지식재산 협력 강화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식재산 나눔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G5 수준의 지식재산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주요국과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수준의 심사처리기간 유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 '10년 특허심사처리기간이 연평균 18.5개월로 미국('09년 25.8개월), 일본('09년 29.1개월) 등 주요국에 비하여 신속한 심사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출원인의 특허전략에 따라 ‘우선심사’, ‘일반심사’, ‘늦은심사’ 중 심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3트랙 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심사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출원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은 선진5개 특허청(IP5)*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10대 기반과제를 공동 추진하는 등 주요 선진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이 해외에서의 지재권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식재산 나눔사업을 확대하여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최빈·개도국에 대한 우호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G5란?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선진5개 특허청으로서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유럽 특허청을 말함

관련 법제 및 시스템 정비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상표의 중요성이 증대됨과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상표가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등을 추가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FTA합의에 따른 이행사항을 국내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정비가 진행 중이며 새로운 행정수요와 제도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해 오던 민원서식을 민원인 관점에서 통·폐합하고, 또 서식의 기재항목과 기재요령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허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조 상품 방지 지원

위조 상품 규제를 효율화하기 위해, 한국 특허청은 검찰, 경찰 및 지방 자치단체와 업무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진품과 위조 상품의 진위 판단 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부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조 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위조 상품을 제조·유통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허청훈령 제655호, '10.2.25.개정)

정부는 '위조 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위조 상품을 제조, 유통하는 자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강화 노력

지식재산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중의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대한 조치방법을 숙지해야 하고 또한 일반 대중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은 지식재산권보호에 대한 비디오 제작 등 교육자료를 제작, 배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와 상담 제공

위조상품제보센터(www.brandpolice.co.kr)가 인터넷상에 개설되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위조상품이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보고할 수 있고, 또한 IPR분쟁에 대해 중재 및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출원에서 분쟁대응에 이르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공익변리사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변리서비스의 소외지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2 국제 협력 강화

다자간 협력 강화

2009년부터 선진 5개국 특허청(IP5: 한·미·일·중·유럽)간의 상호협력이 구체화됨에 따라 국가간 심사 실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비교 분석, 심사관 교육과정의 교차참가, 심사관 합동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심사기준에 대한 국제적 조화와 국가간 심사결과에 대한 상호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APEC 지식재산권 전문가 단체(IPEG)에 가입하여 이 포럼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상담을 진행 하였고 특히, 한국은 국제적인 프로모션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간 협력 강화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와 11건의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RCEP등과 협상을 진행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협력관계를 넓히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 출원 제도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특허 및 실용신안에 관한 해외 출원절차의 통일화와 간소화를 위해 '70년 체결되어 '78년 발효된 다자 조약입니다. ('14. 8월 현재 체약국 148개국)

※ 출처 : 특허청 홈페이지

한국은 특허협력조약(PCT) 1장에 1984년, 2장에 1990년 가입하여 WIPO 또는 한국특허청에 직접 국제출원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선택하는 경우, 특히 북한을 지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PCT규칙 4.9(b)의 우선일로부터 15개월 내에 예비 지정국을 확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오류가 지정국 선택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국내절차 단계에 진입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중대한 문제로서 다시 대한민국에서 신규 출원으로 재출원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WIPO를 통하여 공개되어 발명의 신규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저명 상표의 보호

한국의 상표법상 주지, 누구에게나 알려진 저명한 상표는 그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상표가 등록 받을 수 없도록 보호 받고 있습니다. 저명 상표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에 의한 상표 등록은 거절되며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상표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저명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표 출원의 경우에도 거절될 뿐만 아니라, 이미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이 해관계인은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과 함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하여도 저명상표가 보호됩니다. 타인의 성명, 상호, 저명 상표를 포함하는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상의 시설과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 경쟁 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침해 예방, 관련 손해 배상 및 업무상 신용 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형사상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문의처: 특허청 콜센터 1544-8080
- 저작권 관련 문의처: 저작권위원회 대표번호 02-2660-0000
- 문화체육관광부 대표번호 044-203-2000(담당과 - 문화콘텐츠사업실 저작권정책과)